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대여상환금 지출)
 기 관 명 연꽃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 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에 따라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기관의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꽃유치원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대여상환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1] 연꽃유치원 대여상환금 지출 내역(현금출납부)

거래일자	적요	지출액	채주	목
2018-03-06	대여정기상환금	17,420	1802사학연금	법정부담금
2018-05-21	대여정기상환금	46,830	1805사학연금	법정부담금
2018-06-22	대여정기상환금	29,040	1806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합 계	93,290		

※ 부적정 집행액 93,290원 감사처분 전 보전완료

조치할 사항 연꽃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통학차량 및 현장체험학습차량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연꽃유치원
내 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가 또는 임대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지입차량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및 제36조(계약담당자)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원장이며, 계약의 원칙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성실히 체결하여야 하며, 제3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꽃유치원은 아래 [표2]와 같이 2018~2019학년도에 통학차량 및 현장체험학습차량을 운영하면서 자가(유치원 소유 차량)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임대차량으로 운행하지 않고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있다.

[표2] 연꽃유치원 통학차량 및 현장체험학습차량 임차료 지급 내역

회계연도	수취인	건수	지출액(원)	비고
2018	○○○	14	31,600,000	
2019	○○○	41	40,950,000	
합 계		55	72,550,000	

조치할 사항 연꽃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연꽃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의거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의거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규정된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의거 유치원은 강사료 등의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며,

「2017년 사립유치원 현장 맞춤형 회계 컨설팅(연수)」,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2019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길라잡이」에 의거 유치원회계 지출 시에는 예산 집행 품의, 견적서 징구, 계약, 대가지급, 장부정리 및 증빙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증빙서류 편철 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표(영수증 등), 청구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계약서, 견적서, 계약구비서류, 품의요구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꽃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유치원회계 지출장부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1. 지출결의서 날인 생략

2018회계연도 징수(수입, 반납)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담당(작성)자와 원장의 날인을 누락하여 작성 및 관리하였다.

2. 무증빙 지출

지출증빙서 작성 시 적격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에도 다수의 지출 건에 대해 거래 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연꽃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